

주식회사 케이비동자민간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임시주주총회의사록

주식회사 케이비동자민간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20년 10월 5일 (월) 오후 2시

장 소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(강남N타워 23층) 내 본점 회의실

주 주 총 수	:	2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	:	2,850,000주
출석 주 주 수	:	2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2,850,000주

의장인 대표이사 Law, Chuen Lam Edward 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고 주주총회의 부의안건을 상정하다.

제1호 의안: 대출계약 변경 승인의 건

의장은 대출계약 변경에 대하여 배부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위 대출계약 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 출석주주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: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

의장은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배부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, 위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 출석주주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상정의안이 모두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.(종료시간 오후 2시 3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장 및 출석주주들은 이 의사
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.

2020년 10월 5일

주식회사 케이비동자민간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 표 이 사 Law, Chuen Lam Edward



2020년 제1차
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



(주)케이비동자민간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주)케이비동자민간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020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

◇ 일 시 : 2020년 10월 5일(월) 오후 2시

◇ 장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(강남N타워 23층)
내 본점 회의실

◇ 안 건

-안 건 1. 대출계약 변경 승인의 건

-안 건 2.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



안건 1	대출계약 변경 승인의 건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□ 관련 규정

◇ 당사 정관

제 25 조 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

- ① 2. 해당 영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

□ 내용

1. 대출계약 변경 승인의 건

1) 사 유 : 기금출자 변경 승인(2020.04.29)에 의해 임대기간이 3년 연장되어, 이에 따라 대출계약 변경, 사업약정서 변경계약, 임대주택 리츠표준사업약정서 변경계약을 진행 함.

2) 대출조건

구분	대출기관	대출액	금리(연)	대출기간
민간대출	삼성생명보험	₩51,000,000,000	2.60% (고정)*	3년간 (2020.10.30~2023.10.29)
합계		₩51,000,000,000		

* 변경 전 대출금리 2.65% -> 변경 후 금리 2.60%

3) 변경계약 관련 서류

- 대출계약 변경계약서
- 사업약정서(임대주택 리츠 PF 보증-민간제안, 임대리츠용) 변경계약서
- 임대주택 리츠표준사업약정서(민간제안, 임대리츠) 변경계약서

4) 기타사항

- 대출 관련 계약의 체결 등 상세업무는 AMC에 위임하여 처리 함.

붙임 1_대출계약 변경계약서

2_사업약정서(임대주택 리츠 PF 보증-민간제안, 임대리츠용) 변경계약서

3_임대주택 리츠표준사업약정서(민간제안, 임대리츠) 변경계약서

안건 2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

□ 관련 규정

◇ 당사 정관

제 25 조 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

- ① 3. 자산의 투자·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

□ 내용

1.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

- 1) 사유 : 2015.3.5.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9 조(계약기간) 만기 도래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(3년 연장)

2) 계약내용

- 계약기간

- 변경 전 : 리츠 설립등기일로부터 6년
- 변경 후 : 리츠 설립등기일로부터 9년 (3년 연장)

3) 계약관련 서류

-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4) 기타사항

- 계약의 체결 등 상세업무는 AMC에 위임하여 처리 함.



붙임 4_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